

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소속 회원 복지 증진을 위한 업 무 협 약 서

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(이하 ‘제주교총’)과 삼성전자 주식회사(이하 ‘삼성전자’)는 제주교총 소속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각 기관의 상호 이해 및 호혜의 원칙을 기반으로 회원 사기진작 및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서(MOU)(이하 ‘협약’)을 체결한다.

제1조 (목적) 본 협약은 제주교총과 삼성전자 간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유기적인 업무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제주교총 소속 회원의 복지 증진을 통하여 제주교총 회원의 사기진작 및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기본원칙) 제주교총과 삼성전자는 협력사업을 추진 하는데 있어, 상호 간의 제 규정을 존중하고 상호 호혜 및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한다.

제3조 (협약내용) 양 당사자는 다음 각 호를 진행 함에 있어 상호 적극 협력하며, 구체적인 사항은 상호합의 하에 결정한다.

1. 제주교총 회원 복지 증진에 관한 협력
2. 상호발전과 우호 증진에 필요한 사항 협의(GTL(Galaxy Teacher Lab)) 활성화 등)

제4조 (혜택제공 및 이용방법)

1. 삼성전자 패밀리몰(복지몰)을 통하여 구매 혜택 제공
※<https://www.samsungebiz.com/welfare/familymall> 로그인 후 제품 구매
2. 복지몰 가입 조건
- 회원가입 시 제주교총 회원증 첨부

제5조 (협약기간) 협약 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07월 02일로 하되, 기간만료 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1년마다 자동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본다.

제6조 (자원공유) 양 당사자는 제4조의 협력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 기술적 자원을 상호 공유하고, 교원 복지몰 등의 활용과 공유를 할 수 있다.

제7조 (비밀유지) 본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내용 중 상호 비밀을 유지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 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하며, 이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같다. 다만, 공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합의하여 공개한다.

본 조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당사자는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제8조 (변경 및 해지) 삼성전자는 상호합의 하에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을 계속 이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 본 협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.

제9조 (기타사항) 본 협약서상의 해석에 이견이 있거나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합의 하에 결정한다.

제10조 (효력) 본 협약은 양 당사자의 협약 대표자가 날인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.

제11조 (법적구속력) 본 협약은 제 7조(비밀유지), 제 11조(법적구속력) 및 제 12조(기타)를 제외하고는, 양 당사자의 협약 내용 및 기타 역할의 수행 등 본 협약의 다른 규정들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. 또한 본 협약은 일방이 상대방에게 대리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수여하거나 실시권을 허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.

제12조 (기타) 본 협약에 따른 협력과정상 각 당사자가 담당할 역할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시 별도 합의를 통해 정하는 것으로 한다.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협약의 권리 또는 의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양도, 담보제공 또는 대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.

제13조 (협약준수) 본 협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약서를 2부 작성 및 직인 날인 하여 제주교총 및 삼성전자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6년 7월 3일

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

SAMSUNG

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

회장 장 정 훈 

삼성전자 한국총괄

임 성 태

代 김 상 진 